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62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안상훈 · 김성원 · 주호영
고동진 · 박덕흠 · 한지아
신동욱 · 김용태 · 임이자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
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